

25년 세제개편안

지난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은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발표한 법령 개정안으로, 향후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를 거치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법인세법

법인세율 환원

2023년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구간별로 1%씩 인하된 바 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과세구간별로 다시 법인세율을 1%씩 인상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과 표	'22 년	'23 년~'25 년	개정안
0~2 억원	10%	9%	10%
2~200 억원	20%	19%	20%
200~3,000 억원	22%	21%	22%
3,000 억원 초과	25%	24%	25%

[적용시기] 2026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현행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원천징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소득자로부터 받은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는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은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경우, 실제 지급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현행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받는 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 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되는 금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한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포함)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며(법인세법 제125조),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금액은 관련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II. 조세특례제한법

통합고용세액공제액 합리화

1. 개 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8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산정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규모, 소재지 등에 따라 증가한 임직원 1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의 세액공제를 최대 3년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련 요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후 2~3년 동안 고용이 유지되지 않아 고용이 감소할 경우 고용 감소분에 대해 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고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전액 공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서 “실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변경하고, 연도별 세액공제 혜택 및 사후 관련 요건에 대한 개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될 것이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 별도로 기재하였습니다.

2. 연도별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연도별 세액공제 혜택을 변경하여, 고용 첫 해의 혜택을 낮추고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혜택을 적용함으로써 장기 고용 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추정 세액 및 방식을 완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고용 후 3년간 같은 세액공제 혜택 부여

구 분	1 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 년)		중견 (3 년)	대 (2 년)
	수도권	지방		
우대(청년, 장애인 등)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개정안> 연도별로 세액공제 혜택 차등 부여 (후속 연도에 더 높은 공제 혜택)

구 분		1 인당 공제액 (단위: 만원)			
		중소(3 년)		중견 (3 년)	대 (2 년)
		수도권	지방		
우대(청년, 장애인 등)	1 년차	700	1,000	500	300
	2 년차	1,600	1,900	900	500
	3 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 년차	400	700	300	-
	2 년차	900	1,200	500	
	3 년차	1,000	1,300	500	

한편, 2 년차 이후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 현행 규정에서는 과거 공제액을 추정하고 이후 세액공제 적용을 전면 배제했으나, 세제개편안에서는 과거 기간에 대한 추정을 하지 않도록 완화하였고, 고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개정안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3.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요건 신설 (중견기업 및 대기업)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8에서는 최소한의 고용 증가 인원수에 대한 제한 없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조금이라도 증가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공제요건으로 최소 증가인원수를 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으로 설정하고,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 중 월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월별 근로시간 대신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연간 총 근로시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로 판단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평균에서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반영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식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당해 개정 내용이 시행된 이후에 최초로 세액공제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즉, 12월말 법인의 경우, 세법개정이 2026년 3월말 이전에 완료된다면, 202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 관련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에서는 우대공제가 적용되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판단 기준을 해당 과세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청년 여부 판단 시점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상기 개정사항은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될 것입니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서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하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1인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동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이자소득 연간 합계액과 합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구간에 따라 16.5%~49.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됩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을 신설하여 거주자가 수령한 배당소득 중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한 배당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대상 및 요건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의 배당소득 * 고배당 상장법인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서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법인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적용기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관련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1. 현행 제도 개요

(R&D 세액공제)

현행 세법 상 법인이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공제율은 연구분야의 특성과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R&D 세액공제 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¹⁾	국가전략기술 ¹⁾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	40~50
중견기업	8~20 ²⁾	40	20~30, 25~35 ³⁾	30~40, 35~45 ⁴⁾
대기업	최대 2 ⁵⁾	25	20~30	30~40

[주]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매출액×3),

2)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 년)20%, (4~5 년)15%, (6 년~)8%

3) (~3 년)25~35%, (4 년~)20~30%,

4) (~3 년)35~45%, (4 년~)30~40%

5) 최대 2% [(R&D 지출액 / 매출액) x 0.5]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행 세법은 법인이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등은 제외)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R&D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투자 분야에 따라 공제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	10	+ 10(기본공제 금액의 2 배 한도적용)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공제율) + (과거 3 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 × 공제율)

2. 세제 개편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R&D 및 시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기술 및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미 지난 2025 년 3 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바 있으며, 2025 년 세제개편안에서는 AI 를 포함한 아래 8 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세부 기술 및 시설 항목이 추가로 열거되었습니다.

(i)반도체, (ii)이차전지, (iii)백신, (iv)디스플레이, (v)수소, (vi)미래형 이동·운송수단, (vii)바이오의약품, (viii) 인공지능

각 분야별로 추가된 세부 기술 및 시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분야	7 개 분야 → <u>8 개</u> 분야 확대 * 인공지능 분야 추가	7 개 분야 → <u>8 개</u> 분야 확대 * 인공지능 분야 추가
기술 및 시설	(신설) 71 개 기술 → <u>78 개</u> 기술 확대 * <u>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u> [주 1] (확대) <u>2 개</u> 기술에 대한 적용범위 확대 *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58 개 시설 → <u>61 개</u> 시설 확대 * 국가전략기술급 <u>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u>,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주1] 상기 표에 기재된 내용 중 AI 관련 분야로서 아래의 6개 분야가 새롭게 지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센터”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서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부기술	기술 설명
생성형 AI 기술	텍스트, 이미지 등을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 기술	기계장치와 연동하여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학습 알고리즘(메타러닝, 강화학습 등)을 활용하여 AI 성능 향상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 기술	인간이 AI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 8을 신설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 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대상자:** 만화진흥법 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셜 저작권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공제율]** 10% (중소: 15%)
- **[적용기한]** 2028.12.31.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 6은 저작권법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일정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내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 세액공제율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5 → 10	10
중건	10	10
중소	15	15

✓ 적용기한 연장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III. 국제조세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은 납세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및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조세회피 방지 및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상대국에서의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글로벌 최저한세 - 내국추가세 도입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omestic Minimum Top-up Tax) 규정을 포함하였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국추가세 규정은 OECD의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상 적격소재국추가세 제도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QDMTT)에 부합될 수 있도록 OECD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한국 내국추가세 제도가 OECD의 절차에 따라 QDMTT로 인준되는 경우 소득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이나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 Tax, UTPR)보다 우선 적용되어 한국 구성기업에 발생한 추가세액에 대해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만 과세되고 타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이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고, 국내구성기업에 과세

[내국 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 추가세액 = [글로벌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 추가세액 가산액
- 초과이익: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

국내 구성기업이 둘이상인 경우, 아래의 "a" 또는 "b"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배분

- a.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각 구성기업의 소득규모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예정)
- b.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최소 적용제외 특례]

- 각 구성기업의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 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 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 **상기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함**

[적용면제 특례]

- 전환기적용면제: OECD 규정과 동일하게 소액, 간이실효세율 요건, 초과이익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요건 충족 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전환기('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적용 가능함. 12월말 법인의 경우 2026년 1개년에 대해서만 적용 예정
- 영구적적용면제: 전환기 종료 후 적용되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OECD에서 영구적 적용면제 규정 확정 후 세부내용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IV. 관세법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

현행 관세법 제111조 제2항은 관세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조사받은 해당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복조사 금지 대상을 관세조사통지서에 포함된 조사 대상(기간 및 범위)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결정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의혹, 탈세혐의 일제조사 등의 중복조사 금지의 예외 사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

현행 관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세관공무원은 조사 개시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해당하거나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조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관세조사의 경우 사전 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조정하였으며, 불복청구 등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에 통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사전 통지를 생략한 경우에도 조사 개시 당일에 조사 대상 및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조사대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현행 관세법 제42조의2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결과가 통보된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사전심사 제도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V. 기타

증권거래세율 환원

현행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 세법개정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구분	'23년	'24년	'25년	개정안
코스피(농특세 0.15% 포함)	0.20%	0.18%	0.15%	0.20%
코스닥 및 K-OTC	0.20%	0.18%	0.15%	0.20%
코넥스	0.10%	0.10%	0.10%	0.10%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판단 기준을 지분율 기준과 보유금액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그 중 보유금액 기준은 2023년 세법개정시 시가 10억원에서 시가 50억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중 지분율 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보유금액 기준을 시가 10억원 이상으로 다시 환원하였습니다.

구분(종목당)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2%	4%
보유금액	(현행) 50억원 → (개정안) 10억원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Key Contacts

Global Tax Team		
Oh, Sang Bum	sangbumoh@kr.kpmg.com	02-2112-0721
Lee, Sung Wook	sungwooklee@kr.kpmg.com	02-2112-0946
Kim, Dong Hoon	dkim@kr.kpmg.com	02-2112-0938
Lee, Sang Moo	sangmoolee@kr.kpmg.com	02-2112-7899
Suh, Yu Jin	yujinsuh@kr.kpmg.com	02-2112-0930
Kim, Jung Eun	jungeunkim@kr.kpmg.com	02-2112-0283
Cho, Sang Hyun	sanghyuncho@kr.kpmg.com	02-2112-7687
Song, Hyung Woo	hyungwoosong@kr.kpmg.com	02-2112-0275
Min, Woo Kee	wmin@kr.kpmg.com	02-2112-6886
Park, Sang Hoon	spark17@kr.kpmg.com	02-2112-6672
Lee, Jin Wook	jinwooklee@kr.kpmg.com	02-2112-3476
Lee, Chang Hoon	changhoonlee@kr.kpmg.com	02-2112-6815
Kang, Sung Won	kang22@kr.kpmg.com	02-2112-6771
Baik, Chun Wook	cbaik2@kr.kpmg.com	02-2112-3339
Ryu, Su Seok	suseokryu@kr.kpmg.com	02-2112-6787
Park, Seong Kyun	seongkyunpark@kr.kpmg.com	02-2112-0455

home.kpmg/socialmedia



[Privacy](#) | [Leg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